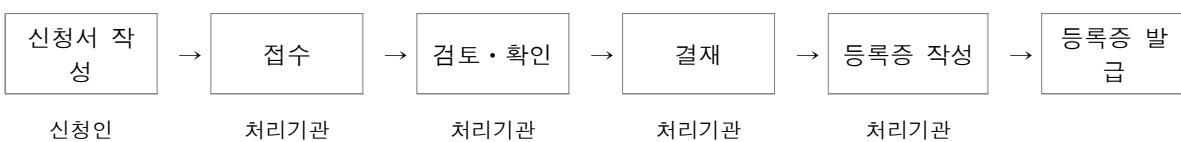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등록을 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허가

▣ 관계법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 ① 신청서 1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③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⑤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 ⑦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⑧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⑨ 사무실 내·외부(간판 포함) 사진 - 현장점검 시 확인 예정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도 민 원 실	15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구 분	금 액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25,000원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	1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법 제26조)

○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독립한 사무소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도 (문 화 예 술 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신청서작성</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접 수</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검토·결재</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등록증 작성</div> <p style="text-align: center;">↓</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등록증 발급</div> </div>